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5. 1. 16 제정
< 양성평등센터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성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및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4.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별 등”이라 함은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이라 함은 성별 등과 관련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라 함은 성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본교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신고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성 인권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9.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제1항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직원(사제직원, 기타 계약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③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해서는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 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양성평등센터의 업무와 조직

제 6 조(업무) 센터는 성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센터의 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양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에는 전문상담사,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사를 둘 수 있다.
- ④ 센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8 조(운영위원회)

-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내의 성 인권 보호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0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최소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센터의 재정 및 운영)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하며, 수입과 지출 및 업무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 12 조(신고 및 접수)

-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다.

- ④ 피해자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⑤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 13 조(직권조사)

- ① 센터가 제12조 제1항 외의 다른 경로로 성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제12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 14 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권리보장)

- ①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1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5 조(조사위원회)

- ① 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센터장은 성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 ②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하고, 사건 관련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위촉한다.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 ⑤ 조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⑥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성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조사·심의하고 성 인권 침해 여부와 징계의 요청 및 기타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16 조(조사의 방법)

-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 3.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는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조치 등

제 18 조(조치)

-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 2. 피신고인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 3.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 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신고된 성 인권 침해 행위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자신의 결정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형사고발할 수 있다.

제 19 조(징계)

-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 2. 피신고인이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 4.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 21 조(조사활동 방해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처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학교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2001. 6. 15. 제정되고 2006. 10. 10. 최종개정)은 폐지한다.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5. 1. 16 제정
< 양성평등센터 >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본교 구성원의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건관련자 보호)

- ①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출석 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 ② 제3자인 신고인, 대리인,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 ③ 사건처리를 위한 제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신고 접수 등)

- ① 센터의 전문상담사는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또는 단체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성 인권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③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제 4 조(소환방법)

- ① 사건관련자를 소환할 때는 본인에게 성 인권 침해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하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한다.
-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 5 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건관련자와 사건처리에 관여했던 사람은 조사 및 사건처리 종료 전까지 당해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단, 사건관련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제 6 조(자료 확보와 피해 구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센터는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조정)

- ①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는 피해정도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 ② 센터는 전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피신고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8 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①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②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조사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 9 조(조사위원의 제척·회피)

-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 위원과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가 속한 학과, 부서가 동일한 경우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가 있는 때는 회피할 수 있다.

제 10 조(징계 및 기타조치)

-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기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행위자 제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의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 ④ 센터장은 피해회복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성 인권 침해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 11 조(자문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처리를 위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기록 및 자료보존) 센터는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처리 과정 등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교규칙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03. 1. 1. 제정되고, 2006. 10. 10. 최종 개정)은 폐지한다.